

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6. 17

나. 제안자 : 장명진 의원 외 22인

다. 회부일자 : 1998. 6. 17

○ 제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98. 6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장명진)

가. 제안이유

부천시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전·현직의
원으로 구성 부천시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의정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
(1)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
(2)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

(3)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

(4) 기타 위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○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
회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
○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
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(안 제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안

의안번호	제389호
의결년월일	98. 6. 20 (제61회)

발의년월일 : 1998. 6. 17

발 의 자 : 장명진 의원 외 22인

☐ 제안이유

- 부천시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전·현직 의원으로 구성 부천시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☐ 주요골자

- 의정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- (1)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 - (2)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
 - (3)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
 - (4) 기타 위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보 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(안 제6조)

조례제 호

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할 부천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의정회는 부천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의정회의 설립·육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
3.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
4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교부)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규정)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